

지휘서신 제2호 :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예방 제도(SHARP Program)

1. 본 지휘서신은 SHARP 관련 기존의 모든 서신에 우선한다. 본 서신의 효력은 철회 또는 대체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2. 관련근거

- 가. 美공법 제117-81호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2021. 12. 27.)
- 나. 美국방부 훈령 제6495-01호 성폭력예방및대응제도(SAPR Program) (2012. 1. 23. 제정, 2020. 11. 10. 시행 제4차 개정)
- 다. 美국방부 지시 제6495-02호 성폭력예방및대응제도에 관한 시행지침(SAPR Program Procedures) 제1편 (2013. 3. 28. 제정, 2022. 9. 6. 시행 제7차 개정)
- 라. 美국방부 지시 제6495-03호 군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 인증제도(D-SAACP) (2020. 2. 28.)
- 마. 美국방부차관실 (2020. 2. 10.) 성폭력예방및대응제도 중 신속분리조치에 관한 개정사항
- 바. 美육군규정 600-20 육군지휘규칙 (2020. 7. 24.)
- 사. 美육군규정 690-600 고용의기회균등에관한사건처리기준 (2004. 2. 9.)
- 아. 美육군 지침 제2018-16호 개별 보직의 평가 항목 (2018. 11. 8.)
- 자. 美육군본부 명령 제221-12호 성희롱및성폭력대응및예방(SHARP)프로그램 일원화 명령 (2012. 6. 23.)
- 차. 美육군본부 명령 제052-14호 육군 부대 및 웹사이트상 성폭력대응전담반 및 피해자보호관 번호 게시 명령 (2013. 12. 31.)
- 카. 美육군본부 명령 제204-16호 성희롱 및 성폭력 신속대응 명령 (2016. 6. 14.)
- 타. 주한미군규정(USFK Reg) 600-20 성폭력예방및대응제도 (2017. 7. 16.)
- 파. 주한미군규정(USFK Reg) 690-1 한국인민간인(KN)에관한규정및절차 (2017. 7. 1.)
- 하. 주한미군 지휘서신 제9호 (2014. 1. 2.)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및 예방 제도 (SHARP Program)
- 거. 美육군규정 385-10 육군안전규칙 (2017. 2. 24.)
- 너. 美육군규정 274-10 검찰및징계규칙 (2020. 12. 30.)
- 더. 美육군규정 600-30 육군지휘규칙 (2020. 7. 24.)
- 러. 美육군규정 690-12 고용의기회균등및다양성 (2019. 12. 12.)
- 머. 美국방부차관실 (2021. 2. 22.) 성폭력예방및대응제도 신속분리조치에 관한 개정사항 중 가족 등에 관한 추가개정사항
- 버. 美육군본부 명령 제105-21호 성폭력예방및대응제도 신속분리조치에 관한 지휘관 및 담당자 교육 명령 (2021. 2. 23.)
- 서. 美육군 지침 제2022-10호 성폭력피해자의 신고 비밀 보장 (2022. 7. 6.)
- 어. 美육군 지침 제2022-13호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2022. 9.

20.)

3. 목적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의 SHARP Program은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국방무 및 육군의 정책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육군 및 한미연합사단은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가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SHARP Program은 사고 예방, 관련 내용 교육, 대응 및 조치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신고 절차 개선,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등을 통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이 근절된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육군의 준비태세에 기여하며,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 등 모든 인원의 안전과 준비태세에 기여한다.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은 소속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안전한 문화 및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 원칙은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어떠한 보복, 협박 및 회유, 또는 불이익처분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및 성희롱은 육군의 핵심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4. 배경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는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 간의, 그리고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신뢰를 파괴한다. 이러한 신뢰는 신성한 것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는 육군 가족의 연대를 파괴하고, 육군 조직의 근간을 흔들며, 사단의 "Fight Tonight"을 위한 준비태세를 위협한다. 한미연합사단은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가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제대의 지휘계선은 조직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권한 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5. 세부 내용

가. 성폭력 및 성희롱은 육군의 핵심가치 및 사단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폭력 및 성희롱은 군인 및 군무원의 사기, 안전, 업무역량 및 응집력에 직접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미쳐 제대의 준비태세를 저해하며 개인의 결근, 업무력 저하, 불신 등을 야기한다. 성폭력 및 성희롱은 부적절·불법적인 가해행위로서, 우리 사단은 가해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자들은 공정과 존중으로 그 존엄성을 보장 받을 것이다.

나. 성희롱은 성차별의 일종이다. 성희롱은 불쾌한 성적 접근, 성적 요구,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성적 발언 또는 동작 등에 대한 피해자의 호응 또는 거부가 업무, 급여 또는 진급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결부되는 경우 발생한다. 피해자의 거부 여

부로 인하여 업무내용 및 진급이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업무능력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공격적·위협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모두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 1) 군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은 위협, 보복,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없이 SHARP Program을 통하여 지휘계통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 2) 성희롱 신고 관련 조사: 조사를 개시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 지휘관은 혐의자가 소속된 여단급 이상의 제대 외부에서 수사장교(Investigative Officer)를 지정하여 美육규600-20 제7장에 의거한 성희롱 신고 조사를 담당하게 한다.
- 3) 군 보호명령(MPO): 모든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혐의자의 지휘계통의 1차 상급 대령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유형력의 행사 등과 같은 이유로 보호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혐의자의 지휘계통 1차 상급 대령급 지휘관은 가능한 빨리(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혐의자의 지휘관은 국방부서식 제 2873호(군 보호명령(MPO))를 작성하여 혐의자에게 송달한다. MPO는 소속 부대의 해당 긴급구조대(Emergency Service) 및 군사경찰대(PMO)에 제출한다. MPO의 사본은 보호 대상자에게(복수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전달된다.
- 4) 사건처리 진행상황 공개: 육규 600-20 제7-5조의t에 따라 성폭력사건심의회(SARB) 결과를 72시간 이내에 사건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와 별개로, 여단장 및 그에 준하는 지휘관은 사건 신고자에게 해당 사건의 형사, 징계, 인사 처분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위임하지 못한다.
- 5) 강제 전역 조치: 지휘관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역복무적부심사를 개시한다. 단 이미 군사재판에 의한 전역 등 강제 전역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니한다.
- 6) 지휘관은 경고장을 포함한 일체의 형사, 징계, 인사 처분의 결과 및 내용을 공시하고 통신문, 게시판 및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하여 전파한다. 단 피해자 보호 및 1974년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of 1974) 준수를 위하여 특정 정보는 생략한다.
- 7) 필요한 도움으로의 연결: 지휘관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이 SHARP를 통해 육군 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들이 성폭력대응반(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 또는 피해자보호반(Victim Advocate)에

직접 연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SHARP만으로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SHARP 담당자는 다른 기관에 직접 연결하여 주어야 한다. 연결이란 타 기관 담당자와의 연락 및 소개만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8) 지휘관은 SHARP 제도와 피해자 보호 제도 목록을 게시판 또는 통행이 잦은 장소 (식당 등)에 게시한다.

9) 성희롱 신고의 방법에는 익명 신고, 구두(informal) 신고, 서면(formal) 신고가 있다.

가) 익명 신고란 그 방법과 무관하게 신원미상 또는 익명의 성희롱 신고 및 USAG Humphreys 성폭력 핫라인(0503-363-5700 또는 0503-357-8912~3)을 통하여 접수된 신고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연중무휴 24시간 011-82-503-363-5700 또는 011-82-503-357-8912로 접수 가능하며, 전 세계에서 접속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Safe Helpline으로도 접수 가능하다(safehelpline.org 참조).

신고자는 자신의 신변을 노출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휘관은 USFK SHARP 상시 핫라인 기타 공식 전화번호를 통하여 익명 신고 방법을 수립하고 그것을 홍보한다. 익명의 신고는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혐의자의 소속 여단장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된다. 18세 이상의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은 DSN (315)756-7134, 사단 SHARP 핫라인(010-8685-7285), 주한미군 SHARP 핫라인(대한민국 내 DSN 158 또는 일반전화 0503-363-5700)을 통해서 사단 및 여단의 SHARP 부서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군인 및 군무원은 보복행위 및 보복의 위협, 불이익 조치 등이 있는 경우 사단 SHARP 부서(DSN 756-7133~5) 및 감찰부(DSN (315)756-7351) 또는 국방부 감찰 핫라인(DSN 312-664-8779 및 일반전화 1-800-424-9098)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구두 신고란 군인 또는 가족이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구두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해결하거나, 주변 인원, 성폭력대응반(SARC) 및 피해자보호반(VA) 담당자, 지휘관을 포함한 신고자의 지휘계통의 상급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두 신고를 받았거나 그 해결에 관하여 상담한 성폭력대응반 담당자는 공문으로 그 기록을 유지한다. 성폭력대응반 담당자는 신고자 또는 타인의 신고를 통하여 지휘관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될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설명한다.

다) 서면 신고란 신고자가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그에 관하여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는 신고를 말한다. 서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구체적인 후행 조치가

요구되며, 각 조치는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조치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서면 신고는 각 여단 성폭력대응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국방부서식 제7746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서면 신고는 피해 사실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함이 바람직하다. 여단 지휘관은 서면 신고 접수 시 보통군사법원 회부결정권자에게 72시간 내 보고하여야 한다.

- 11) 성폭력 피해를 입은 육군성 군무원은 공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 12) 공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육군성 군무원은 국방부서식 제2910호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성폭력대응반(SARC), SHARP, 피해자보호반(VA), 피해자대리인(Victim Representatives)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위 보호 수단에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분리 조치, 의료 혜택, 법률 혜택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근거 다. 및 사.)
- 13) 공개 신고를 한 군무원이 신고내용에 관한 보복 피해를 받는 경우, 국방부서식 제2910-2호를 작성하여 보복행위 신고를 할 수 있다.
 - 가) 관련 행위는 고용단체협약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 나) 군무원의 성희롱 신고는 해당 고용기회균등부서(EE0 Office)에 의하여 지속 관리된다. (관련근거 바. 및 서.)
- 14) 육군성 군무원은 소속 USAG 부대의 고용기회균등부서에 연락할 수 있다. Area I은 DSN (315)722-1027 또는 일반전화 0503-322-1027, Area II은 DSN (315)722-5010 또는 일반전화 0503-322-5010, Area III은 DSN (315)755-9155 또는 일반전화 0503-355-9155이다.
- 15) 대한민국 국적의 군무원은 성희롱 피해에 관하여 주한미군규정 690-1 제13-5장에 의거한 신고절차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다. 성폭력은 범죄행위이다. 성폭력은 고의의 성적 유형력, 위협·협박, 권력의 남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함을 말한다. 성폭력은 강간, 추행, 치상, 학대와 같은 군형법상의 범죄 및 그 미수를 포함한 광범위한 성범죄를 모두 포괄한다. 성폭력에 대하여는 공개 신고 및 비공개 신고 두 종류의 신고 방법이 있다. 성폭력은 육군의 핵심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군형법 및 연방·현지 민간 법령의 처벌 대상이다.

- 1) 군의료시설에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군인, 18세 이상의 군인가족, 육군성 군

무원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 필요한 도움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시설 국방부 보건국과 협조하여 군의료시설 지휘관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가) **비공개 신고**는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이 신고되었음이 사단장에게 보고되나, 피해자의 이름 및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보고되지 않는다. 비공개 신고는 성폭력 피해자인 군인 및 18세 이상의 가족이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밀리에 특정 담당자(성폭력대응반, 피해자보호반, 피해자대리인, 보건당국 등)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보건의료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성폭력의 피해자가 성폭력대응반에 신고할 시에는 성폭력대응반이 직접 대응하거나, SHARP 피해자보호반이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대응이란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건 및 의료 제공, 성폭력 포렌식 검사 제공, 국방부서식 제 2910호 신고 및 그에 의거한 공개·비공개 여부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비공개 신고는 군인 및 18세 이상의 가족에게만 제공된다. 육군성 군무원은 비공개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성폭력대응반, SHARP 피해자보호반, 또는 보건의료 당국과 먼저 상의하여야 한다. 비공개신고를 한 자는 언제든지 공개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 공개신고로의 전환은 피해자 및 성폭력대응반 또는 피해자보호반 담당자가 국방부서식 제2910호의 해당란에 서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성년의 성폭력 피해자는 국방부서식 제2910호의 비공개 신고를 통하여 지휘관 또는 사법당국에 보고 없이 오직 특정 담당자로부터 보건의료(일반의료 및 정신건강), 보호조치(성폭력대응반 및 피해자보호반), 법적 조력(성폭력 피해자국선변호부)을 받을 수 있다. 공공의 질서 및 지휘책임을 위하여 성폭력대응반은 지휘관에게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나, 피해자의 신상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은 보고하지 않는다.

(3) 이는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자신의 개인정보의 노출 등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추후 사건 수사에 관하여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비밀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사법제도들에 비추어 보면 신고의 비밀 보장은 높은 신고율로 이어진다. 피해자가 공식 수사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휘관은 신상을 배제한 신고 내용을 보고받는다. 이로서 지휘관은 부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전 인원의 준비태세 및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비공개 신고를 위한 요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다:

(가) 피해자는 다음의 경우 비공개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이미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에 성폭력 사건의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기존에 이미 국방부서식 제2910호를 통한 공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피해자는 다음의 경우에도 비공개 신고를 할 수 있다:

(가) 이미 지휘관 등 지휘계통의 인원에게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에 의한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다) 해당 사건에 관한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6) 제3자에 의한 신고에 의한 수사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개시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비공개 신고를 할 수 있다.

(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피해자는 비공개 신고를 할 수 있다. 가령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 수사기관이 이미 독자적으로 인지한 수사를 개시한 후 그것을 성폭력대응반에 통지하여 성폭력대응반이 인지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성폭력대응반에 비공개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비공개 신고는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비공개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 비공개 신고가 접수되면, 지휘관은 비공개 신고 접수 사실을 안 때부터 해당 내용의 피해자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요구하지 못한다.

나) **공개 신고**는 그 즉시 수사가 개시되며, 지휘관에게 보고되고, 신고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보호조치가 제공된다. 성폭력 사건이 공개 신고 절차에 따라 접수되면 성폭력대응반이 직접 대응하거나, SHARP 피해자보호반이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대응이란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건 및 의료 제공, 성폭력 포렌식 검사 제공, 국방부서식 제2910호 신고 및 그에 의거한 공개·비공개 여부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피해자가 공개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범죄수사사령부에 보고되는 때부터는 비공개 신고로 전환할 수 없다. 국방부 사법당국 담당자는 피해자의 권리 및 담당자 등을 명시하는 국방부양식 제2701호를 작성하여 비공개 신고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다) 진술거부 피해자: 신고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

(1) 성폭력 사건에 관한 세부 정보는 업무상 그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자

에게만 공개된다. 지휘관, 범죄수사대, 지휘계통의 주요직위자 등 조사·수사 및 소추 과정의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한다. 단, 피해자는 임의로 공개 신고를 비공개 신고로 전환할 수 없다. 성폭력대응반, 피해자보호반 또는 피해자대리인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진술하지 않더라도 수사 등의 절차는 진행됨을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대응반, 피해자보호반 및 피해자대리인의 도움, 보건의료 혜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위 도움은 그 혜택을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모두 제공된다. 피해자가 성폭력대응반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국방부서식 제2910호에 서명하지 않은 채로 신고 절차를 중단한 경우, SHARP 담당자 또는 보건의료 담당자는 군 수사기관 또는 지휘관에게 위 사안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그에 관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휘관 또는 군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경우, 그 내용 공개는 군사증거법 제514조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 라) 인지수사: 인지수사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개시된 수사를 말한다. 지휘관이 성폭력 사건을 그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지한 경우(한편 피해자는 비공개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휘관은 군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그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수사가 개시된다.
- (1) 인지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사법당국이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인지한 것이 아닌 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비공개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방부서식 제2910호에 따라 비공개 신고를 선택한 이후에 인지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 개시는 비공개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휘관이 비공개 신고의 내용을 그와 연관된 공상·질병 심의를 통하여 인지한 경우에도 그 신고는 비공개 신고로 유지되며 범죄수사사령부에도 보고하지 않는다.
 - (2) 성폭력 피해자가 보건의료 당국에 먼저 피해를 호소한 경우, 해당 담당자는 성폭력대응반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한다. 성폭력대응반 및 피해자보호반은 공개 및 비공개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제도 및 조치, 신속분리조치, 성폭력피해자국선번호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며, 피해자가 희망할 시 국방부양식 제2910호 및 신고 보조 진술(조)서의 작성을 안내한다. 군종장교 및 피해자국선번호인은 진술서를 접수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다. 성직자 및 변호인의 비밀준수의무로 인하여, 군종장교 또는 피해자국선번호인이 접수한 진술서 또는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여는 SHARP의 조치 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3)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국선번호부(Special Victims Counsel) 및 SHARP 담당자(성폭력대응반 및 피해자보호반)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 상담 내용은 군증거법 제514조에 의하여 비밀로 보호된다.

(4) 군인또는 그 성년 가족인 비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신속분리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신고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존엄을 공정하게 존중받는다. 피해자의 신상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최선의 과제이다.

라. 지휘관, 관리감독자, 각급 주요직위자는 그 예하의 모든 인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무하게 할 책임이 있다. 각급 주요직위자는 업무공간, 거주공간, 문화공간 등 사령부 내 모든 영역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위험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지휘관은 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 경우 육규 600-20에 의거하여 성폭력대응반 및 범죄수사사령부에 지체없이 고지한다. 지휘관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 판단을 위하여 내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범죄수사사령부에 대한 보고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지휘관은 보임 후 30일 이내에 성폭력대응반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다. 보고는 제대 및 주둔 지역의 성폭력 사건 관련 동향, 공개 및 비공개 신고 접수 시 비밀보장 및 인지 필요 범위, 성폭력사건대응관리(SAIRO)보고서의 요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는 주요직위자의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 사단의 주요직위자들은 소속 인원들이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는 각급 주요직위자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며, 부적절한 농담, 사람을 대상화하는 부적절한 내용의 매체, 기타 부적절한 관계 또는 행위 등 사고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위의 행위들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단은 모든 인원을 존중하며 타인 및 성(性)을 대상화하는 행동은 절대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바. 주요직위자는 예하 인원에게 사단의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노력에 관하여 교육한다. 예방에 실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휘관 및 주요직위자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전문적인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휘관, 주요직위자 및 관리감독자는 SHARP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 담당자(성폭력대응반 및 피해자보호반을 포함한 SHARP 담

당자, 성폭력 포렌식 수사관, 보건의료당국, 사법당국, 피해자 및 목격자 보호제도(육규 27-10 제18장의 VWP) 등)의 의무 및 책임을 숙지한다.

사. 주한미군 SHARP 핫라인(DSN 158 또는 763-5700, 일반전화 0503-5700)은 휴일 없이 상시 24시간 응답한다. 성폭력 피해자 및 성희롱 신고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발신자가 자동응답기능의 안내에 따라 해당 지역 번호를 누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SHARP 담당자가 응답하여 조치한다.

아. 군공익신고자보호법

육군성 소속 인원은 그 누구도 군인이 법에 보장된 방법으로 국회 또는 검찰부서에 연락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연락을 하였거나, 시도하였거나,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군인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미연방법 제10호 제1034조, 국방부지침 제7050.06호). 제5조의12의 사항은 처벌 대상이며, 군형법 제92조 a항에 따라 처벌된다. 군 소속 인원이 법에 보장된 방법으로 국회 또는 검찰부서에 연락하는 행위는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을 수 없다. 그 누구도 군 소속 인원이 위와 같은 연락을 하거나, 시도하거나,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이익이 되는 인사 조치를 보류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위협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연락은 다음과 같다: 상기 제5조의12 b항 제4호의 법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원, 검찰부서, 국방부 감사·감찰·수사·사법당국, 지휘계통상의 개인 또는 부서와의 연락, 군사재판에의 참여, 기타 법령 및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연락의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의 연락, 수사절차상 진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사 과정에 참여 또는 조력하는 행위, 그 외에 군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신고행위를 하거나, 그 신고의 원인이 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군인 또는 군무원은 보복행위 및 보복의 위협을 성폭력대응반,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SHARP 담당자(DSN(315)756-7135),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감찰참모부(DSN(315)756-7351), 국방부 감찰 핫라인 (DSN (312)664-8779, 일반전화 1-800-424-9098) 중에 임의로 신고할 수 있다.

자. 보복행위

군인은 피해자, 피해를 신고한 자, 또는 군인인 타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혐의사실의 신고 또는 신고할 의도를 이유로 보복하거나 그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13의 사항은 처벌 대상이며,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국방부의 세부 지침이 없는 한 제5조의13의 보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인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신고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연락을 하거나 시도한 자에 대하여 부정하게 불이익한 인사상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할 것으로 위협하는 경우, 또는 그 신고 또는 연락을 방해하거나 그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이익이 되는 인사 조치를 보류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위협하는 행위(군형법(2019년 개정) 제132조 참조).

차. 육군 지침 제2022-10호(2022. 7. 6.)의 안전한 신고

- 1) 육군은 유해한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지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신고 Safe to Report” 계획을 수립하였다.
 - (가) 안전한 신고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건에 시간·장소적으로 접착하여 행한 경미한 비위사실에 대한 처벌을 면책한다.

카. 독립된 검찰국: 특정사건 전담 검찰국(Special Trial Counsel)은 독립된 검찰기관으로서 살인, 강간, 아동학대 등 특정 사건에 관한 수사, 송치, 공소 제기·유지 및 집행을 담당한다.

타. 군인은 일과 중 및 일과 외에 소셜미디어서비스를 이용할 시 군형법 및 육군핵심가치의 적용을 받는다. 군형법 및 군인복무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발언, 게시, 링크 전송 등은 금지된다. 성적 이미지의 위법한 전시 또는 배포는 군형법 제117조 a항에 따라 처벌된다. 해당 조항의 위반사실은 범죄수사대(CID)의 수사 대상이 된다.

파. 신속분리조치가 승인되는 경우 전출부대의 대령급 지휘관은 전입부대의 대령급 지휘관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하며, 이는 전출 전에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든 경우(임지 이동(예정 및 사전 무관), 출장(지역 내 및 외 무관) 등)에 해당된다.

- 1) 이동하는 인원이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출 부대의 대령급 지휘관은 전입 부대의 대령급 지휘관에게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가)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다) 피해자를 위한 보건의료(신체 및 정신건강 포함) 혜택이 제공되는 중인 경우
 - 라) 피해자에 관하여 성폭력사건심의회(SARB)의 월간 보고가 진행 중인 경우

마) SHARP 제도의 도움이 제공되는 중인 경우

2) 이동하는 인원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제공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차 가해 또는 도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인계되는 정보는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내용, 진행 중인 수사의 상황, 진행 중인 법적 절차의 상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에 한한다. 전입 부대의 지휘관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 의료 혜택, 수사기관의 협조, 법적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 지휘관은 국방수권법(2022회계연도) 및 육규 600-20에 따라 성폭력대응반 및 피해자보호반의 각 전담 및 경임 담당자를 대면 후 선정하고 서면으로 임명한다. 모든 성폭력대응반 및 피해자보호반 담당자는 임명 전에 신원조사, 관련 교육, 군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 인증(D-SAACP)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제대는 월간 및 분기간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하여 훈련, 교육, 행사, 홍보 등을 계획, 발전, 협조한다. 특히 4월에는 성폭력 인지·예방의 달(Sexual Assault Awareness and Prevention Month) 지역 행사를 개최한다. 군인, 군무원 및 가족은 이같은 행사에 참여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6. 본 지휘서신은 모든 공식 게시판에 공시하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전 인원에 배포한다.

7. 이 지휘서신에 관한 담당부서는 사단 SHARP 담당자(DSN (315)756-7134, 일반전화 0503-356-7134)로 한다. 끝.


WILLIAM D. TAYLOR
Major General, USA
Commanding

